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4조(기금회계적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u>기금출납명령관</u> 및 <u>기금출납공무원</u>을 임명하여야 한다.</p> <p>② 기금의 회계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u>기금출납명령관</u>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u>기금출납공무원</u>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p>	<p>제4조(기금회계적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u>기금운용관</u> 및 <u>기금출납원</u>을 임명하여야 한다.</p> <p>② 기금의 회계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u>기금운용관</u>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u>기금출납원</u>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p>

<p>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p> <p>심사 보고서</p> <p>1994. 4. 12</p> <p>도시건설위원회</p> <p>1. 심사경과</p> <p>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3. 3. 마포구청장 제출</p> <p>나. 회부일자 : 1994. 3. 4</p> <p>다. 상정일자 : 제2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94. 4. 12.) 상정, 의결</p> <p>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비국장 이상하)</p> <p>가.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 8. 9.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953호)의 개정에 따른 불일치되는 조문을 상위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될 사항중 누락된 사항의 보완 및 일부 규정을 완화하므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 <p>나.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별표1) 건축물의 용도분류 조정에 따른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용도제한 규정 정비(안 제21조, 제36조) ○ 용도지구내 풍치지구 및 미관지구안의 단서규정 삭제(안 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 ○ 자동차 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15미터 미만도로에 면한 아파트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완화(안 제17조, 제42조, 제43조) ○ 건축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5조) <p>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 관수)</p> <p>시대적 요청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불합리 하였던 제규정을 정비하여 마포구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동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건축위원회의 기능은 일부 추가 강화된 부분도 있으나 이는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건축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의 일환임은 물론 이웃</p>	
---	--

주민간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소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8
----------	-----

제출일자 : 1994년 3월 3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93. 8. 9.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953호) 개정에 따른 불일치되는 조문을 상위법령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중 누락된 사항의 보완 및 일부 규정을 완화하므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개정골자

- 건축법시행령(별표1) 건축물의 용도분류 조정에 따르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용도 제한 규정정비(안, 제21조, 제36조)
- 용도지구내 풍치지구 및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단서규정 삭제 (안, 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
- 자동차 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15미터 미만도로에 면한 아파트 경우 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할 거리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할 거리 완화(안, 제17조, 제42조, 제43조)
- 건축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5조)

- 기타(안, 제51조)

3. 개정근거

- 건축법시행령('93. 8. 9. 대통령령 제13953호)
- 건지58550-1470('93. 7. 22). 건축허가 대상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건축위원회 심의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예산수반여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 지구안의 건축물 및 10세대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허가에 관한사항

제5조증 제6호 내지 11호를 제7호내지 제12호로 각각하고, 제12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 제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개축의 범위 완화

제5조증 제19호를 제20호로하고,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지하2층이상 굴토시에 첨부하게되는 훈막이 구조도면에 대한 심의

제17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 관련시설중 주차장

제21조증 제1호를 삭제한다.

제21조증 제2호 내지 제21호를 제1호 내지 제20호로 각각하고, 동조증 제1호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를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육외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단란주점”으로 하며, 동조 제12호중 “(위험물 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 총포판매소, 주유소, 저장탱크용량 10톤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제외한다)”를 “(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 주유소, 저장탱크용량 10톤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2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29조중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으로 한다.

제30조중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으로 한다.

제36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균린생활시설중 공장, 육외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총포판매소, 안마시술소, 당구장, 청소년전자유기장, 장의사, 동물병원

제42조 제2호 표의 용도란중 “(운전, 정비학원을 제외한다)”를 “(운전, 정비학원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42조 제4호중 “다음 건축물의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를 “다음건축물”로 한다.

제42조 제4호의 표중 아파트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파트	6 (다만, 너비15미터 미만인 도로에 면한 부분은3)	모든 건 축 선
-----	---	-------------

제43조의 표 구분란 기타건축물 중 “500m 이상 창고, 자동차관련시설(운전, 정비학원을 제외한다)”를 “500m 이상 창고, 자동차관련시설(운전, 정비학원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1조중 “건축물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5호에 의거”를 “건축물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4(생략)</p> <p>5.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사항</p> <p>(신설)</p>	<p>제5조(기능) (현행과 같음)</p> <p>1~4(현행과 같음)</p> <p>5.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 안의 건축물 및 1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허가에 관한사항</p> <p>6. 영 제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개축의 범위완화</p>

현 행	개 정 (안)
6~11(생략) <u>12. 제22호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 폐율의 지정 및 높이제한 완화</u>	7~12(현행 제6호 내지 제11호와 같음) <u>(삭제)</u>
13~18(생략) <u>(신설)</u>	13~18(현행과 같음) <u>19. 규칙 제14조제1항에서 지하2층이상 굴 토시에 첨부하게 되는 흙막이 구조도면 에 대한 심의</u>
19. (생략) 제17조(대지안의 조경) ①(생략) 1~5(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일부 완화하거나 적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생략) <u>(신설)</u> ③(생략) 1~2(생략) 제21조(용도제한)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 의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다. 1. <u>공동주택중 아파트</u> 2. <u>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u>	20. (현행 제19호와 같음) 제17조(대지안의 조경) ①(현행과 같음) 1~5(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u>4. 자동차 관련시설중 주차장</u> ③(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제21조(용도제한) (현행과 같음)
3~12(생략) <u>1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취급소액 화가스취급소, 총포판매소, 주유소저장 탱크용량 10톤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총 전소를 제외한다)</u> 14~21(생략)	<u>〈삭제〉</u> 1. <u>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육외풀프연 습장, 노래연습장, 단란주점</u> <u>〈삭제〉</u> 2~11(현행 제3호내지 제12호와 같음) 12. <u>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 주유소, 저장탱크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총전소를 제외한다)</u> 13~20(현행 제14호내지 제21호와 같 음)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전폐율)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폐율은 1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풍치지구중 국립공원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를 제외한 구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구역안에서는 10분의 4의 범위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이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p> <p>제23조(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하거나 12미터를 초과할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의 풍치지구중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를 제외한 구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구역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 20미터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제22조(전폐율) 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폐율은 1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23조(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하거나 12미터를 초과할수 없다.</p>
<p>제29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내의 기존 대지에 대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제곱미터로 한다.</p> <p>1~5(생략)</p>	<p>제29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내의 기존 대지에 대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제곱미터로 한다.</p> <p>1~5(현행과 같음)</p>
<p>제30조(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을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을 띠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의 도로너비가 15미터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생략)</p>	<p>제30조(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을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 띠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의 도로너비가 15미터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제36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①(생략) 1. 균质地설중 공장, 안마시술소, 당구장, 청소년전자유기장, 장의사, 동물병원 2~17(생략) ②(생략) 제42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1. 생략 2. 당해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건 축물 (별지 제1호 표 “현행”란과 같음) 3. (생략) 4. 아파트와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u>1천제곱미터 미만인</u> <u>다음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u> <u>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u> (별지 제2호표 “현행”란과 같음) 제43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 (별지 제3호표 “현행”란과 같음) 제51조(저수조시설) 건축물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5호에 의거 위생 적 관리를 위한 저수조시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3(생략)	제36조(학교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 ①(현행과 같음) 1. 균质地설중 공장, 옥외골프연습 장,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총포판매 소, 안마시술소, 당구장, 청소년전자 유기장, 장의사, 동물병원 2~17(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42조(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표 “개정”란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아파트와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u>1천제곱미터 미만인</u> <u>다음건축물</u> (별지 제2호표 “개정”란과 같음) 제43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 (별지 제3호표 “개정”란과 같음) 제51조(저수조시설) 건축물설비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5호 규정에 의하 여 위생적 관리를 위한 저수조시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3(현행과 같음)

제1호표(현행)

용 도	지역구분	띄어야 할 거리(미터)		적용대상 건축선
		1천제곱미터미만	1천제곱미터이상	
창 고 시 설	준공업지역	2	3	2이상의 도로에 접한경우 주출 입구가 있는 도로에 한한다.
	기타지역	3	4	
운수시설및자동차관련시설 운전,정비학원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2	4	
	기타지역	4	6	

(개정)

용도	지역구분	띄어야 할 거리(미터)		적용대상 건축선
		1천제곱미터미만	1천제곱미터이상	
창고시설	준공업지역	2	3	2이상의 도로에 접한경우 주출 입구가 있는 도로에 한한다.
	기타지역	3	4	
운수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운전, 정비 학원 및 주차장 을 제외한다	준공업지역	2	4	
	기타지역	4	6	

제2호표(현행)

용도	띄어야 할 거리(미터)	적용 대상 건축선
아파트	6	모든 건축선
관람집회, 종교시설		주출입구가 면한
장례식장	2	도로에 한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주출입구가 면한
임시계 학원	3	도로에 한한다.

(개정)

용도	띄어야 할 거리(미터)	적용 대상 건축선
아파트	6 (다만, 너비 15m미만 도로 에 면한 부분은 3)	모든 건축선
관람집회, 종교시설		주출입구가 면한
장례식장	2	도로에 한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주출입구가 면한
임시계 학원	3	도로에 한한다.

제3호표(현행)

〈단위: 미터〉

구 分		외벽각부분(노대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기 타 건 축 물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판매 숙박관람집회 전시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2.0이상	1.0이상
	전용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1.0이상	0.5이상
	일반, 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0.5이상	0.5이상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	1.0이상	0.5이상
	500㎡이상 창고, 자동차 관련시설 운전, 정비학원을 제외한다)	3.0이상	2.0이상

(개정)

구 分		외벽각부분(노대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기 타 건 축 물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판매 숙박관람집회 전시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2.0이상	1.0이상
	전용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1.0이상	0.5이상
	일반, 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0.5이상	0.5이상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	1.0이상	0.5이상
	500㎡이상 창고, 자동차 관련시설 운전, 정비학원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3.0이상	2.0이상